

지역연구 제32권 제2호 2016년 6월 30일

Journal of the KRSA

vol.32, no.2, 2016 pp.45-59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이중차별적 임금격차 분석*

이영경** · 임업***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for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Seoul Local Labor Market of Korea*

Young Kyeong Lee**, Up Lim***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이중차별적 임금차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지역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Oaxaca-Blinder 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를 보다 엄밀하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자료로는 1차(2008년)와 5차(2012년)의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자료와 11차(2008년)와 15차(2012년)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임금격차 분해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조건으로 인해 이중적으로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과 관측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들의 시간에 따른 변화는 장애와 성별에 기인한 임금격차 수준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다.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변화에 따른 임금보상수준 및 관측되지 않은 노동시장 내의 임금불평등도 변화로 인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했지만 장애임금격차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여성장애인, 이중차별, 임금격차, Oaxaca-Blinder 모형, Juhn-Murphy-Pierce 모형,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 본 논문은 (사)한국지역학회 2015년도 후기학술대회 우수논문상 수상논문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석·박사통합과정(주저자: y.k.lee@yonsei.ac.kr)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교신저자: uplim@yonsei.ac.kr)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ic and dynamic change of wage differential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he Seoul local labor market.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double discrimination mechanism for disabled women and empirically gender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for them by using Oaxaca-Blinder decomposition analysis. In addition, using Juhn-Murphy-Pierce decomposition analysis, we analyze the wage differentials caused by the changed characteristics of disabled women and structures of discrimination at the Seoul local labor market. Data from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an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for two years (2008, 2012) are used. According to the result, wage differentials of disabled women caused by disability discrimination is approximately 55% of total wage discrimination, whereas 45% is caused by gender discrimination during the period. Both observed and unobserved components move in the same direction to narrow wage differentials due to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gender discrimination. Also the endowments in the Seoul local labor market about the changes of observed and unobserved components contribute more to narrow gender wage differentials, while these endowments widen disability wage differentials.

Key Words : Women with Disabilities, Double Discrimination, Wage Differentials, Oaxaca-Blinder Model, Juhn-Murphy-Pierce Model, Seoul Local Labor Market

1. 서론

1) 연구의 배경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경험하는 대표적인 집단으로서 만성적 실업과 저임금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경우가 많다. 노동시장에서의 차별(discrimination)이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보유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고용주의 편견이나 선입견 등 생산성과는 무관한 요인들이 개입되어 취약집단의 노동가치가 여타 구성원에 비해 저평가되는 현상을 의미한다(Arrow, 1971). 즉,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으로서 장애인이 겪는 저임금·저소득의 문제는 단순히 이들의 낮은 생산성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며, 지역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취약집단에 대한 구조화된 차별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다룬 최근의 논의들은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double discrimination)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는 여

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여건에 놓여있음을 뜻하는 개념으로서, 여성장애인 집단이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겪게 되어 더욱 낮은 임금소득만을 얻는다는 것이다(Baldwin and Johnson, 1995; 유동철, 2000).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월급여액은 남성장애인 근로자의 65.6%에 불과하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차별 문제의 심각성은 법률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2007년에는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을 별도로 명시하여 강조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의 문제가 중요한 논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들은 다소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노동가치에 대한 저평가가 장애와 성별 중 어떤 요인에 주로 기인하며, 그 정도는 어떠한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다. 대부분

의 선행연구들은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성별 요인에 따른 이중적 차별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강동욱, 2004; 오욱찬, 2011; 유완식·임수정, 2011). 여성장애인의 성별임금격차를 분석한 연구가 있지만(정하나, 2010), 장애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장애와 성별 요인을 포괄하는 이중적 차별의 메커니즘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임금차별을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속성이 시간적으로 변화할 뿐만 아니라 이들을 둘러싼 고용시장의 변화 역시 차별의 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 장애인 고용패널조사(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및 한국복지패널(KoWePS: Korea Welfare Panel Study) 등 장애인 고용시장의 특성을 종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개인 수준 및 노동시장 수준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종단적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분석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차별의 양상을 엄밀하게 파악하지 못하였다. 노동가치에 대한 임금보상은 개별 근로자가 소속된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가지고 이루어진다(Cotter et al., 1999). 이는 특정 노동시장이 지닌 일자리 구조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비제도적 요인들이 임금근로자의 기회 구조를 강화 또는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현영 외, 2014).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를 다룬 대부분의 연구들은 공간적 범위에 대한 고려 없이 전국을 단일한 노동시장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유동철, 2000; 정하나, 2010). 이 경우 분석대상이 된 장애인 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은 각자가 소속된 지역노동시장의 상이한 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여성장애인 임금격차에 대한 분석결과가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을 공간적 범위로

설정하여 해당 지역노동시장에 소속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겪고 있는 이중차별적 임금격차를 분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경험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이중적 차별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장애인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수행된 실증연구에서 사용된 임금격차 분해방법의 한계를 고찰한다.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적 임금격차를 분해하기 위한 분해방법으로는 Oaxaca-Blinder 모형(이하 OB모형)과 Juhn-Murphy-Pierce 모형(이하 JMP모형)을 응용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이 겪고 있는 임금차별의 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1)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임금차별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특정 집단의 구성원이 보유한 능력(ability)을 토대로 보장된 대우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Becker, 1971).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예는 임금격차(wage differentials) 현상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는 생산성의 차이(differences)로부터 비롯되기도 하지만, 생산성 차이와는 무관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생산성과 관련 없이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경우를 노동시장의 차별(discrimination)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두 명의 근로자가 육체적·정신적 능력의 측면에서 동일한 생산성을 가진다고 가정하였을 때, 외견상 구별되는 특성(성별, 장애, 인종, 민족 등)으로 인하여 특정한 한 명의 근로자가 생산성에 대한 온전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차별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차별을 받기 쉬운 특정한 집단을 경제적 소수자(economic minority)로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의 연구들은 대체로 여성, 장애인, 고령자 등을 경제적 소수자로

분류하고 있다(유경준 외, 2005). 일반적으로 경제적 소수자들 중에서도 장애인 집단은 차별의 위험성에 가장 크게 노출되어 있는 집단으로 논의된다. 장애인 집단은 생산성과 관련한 여타 속성들이 다른 집단과 동일하더라도 장애라는 특성에 과도한 가치가 부여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생산성의 차이는 임금의 차이를 유발하지만, 생산성 관련 요소들을 통제된 후에도 발생하는 노동시장 내부에서의 차별은 임금차별을 야기하게 된다(유동철, 2000). 문제는 생산성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임금차별이 임금차이와 결합되어 더욱 큰 임금격차를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인이 보유한 능력에 대한 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임금차별의 문제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로서 개인의 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는 임금차이보다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 중 차별적 보상에 따른 부분을 생산성 차이로 인한 부분과 분리하여 분석하는 연구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Baldwin, 1994; 유동철, 2000; 정한나, 2010; 유완식 · 임수정, 2011). 이는 임금격차를 구성하는 임금의 차별과 차이를 실증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까다롭다는 점에 기인한다. 이에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경험하는 임금차별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일부 연구들은 임금격차 부분 중 차별에 따른 효과를 분해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시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노동시장 취약집단이 겪는 임금격차의 구조를 분해하기 위해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론은 OB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임금격차의 변화양상에 대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한 JMP모형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모형들은 장애인에 대한 임금차별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임금차별과 차이의 실증적 구분과 더불어 임금격차의 분해에 있어 제기되는 또 다른 논점은 지역노동시장의 특성이 여성장애인의 임금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하게 통제된 상태에서 임금격차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두 명의 여성장애인이 지닌 생

산성이 동일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임금차별의 정도 역시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각 근로자가 근무하는 지역노동시장이 상이하다면 임금수준 역시 다를 수 있다. 이는 지역노동시장 수준의 특성에 따른 효과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임금격차구조를 분해할 경우, 분석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임금격차와 관련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은 전국을 단일 노동시장으로 간주한 채 임금격차를 분석하였다는 한계를 가진다(유동철, 2000; 정한나, 2010). 장애인의 임금격차에 지역노동시장이 가진 상이한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김성희 · 정병오, 2011), 이들 역시 대도시와 그 외 지역으로 구분하는 지역더미변수를 임금 분해식에 추가하는 정도에 그쳐 지역노동시장 여건에 따른 효과를 엄밀하게 통제하지는 못하였다(Becker, 1971).

장애인이 겪는 임금차별을 파악하는 연구의 중요성은 노동시장에서 장애인 임금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정한나, 2010). 장애인 임금정책의 방향은 장애인 임금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받는 임금차별의 정도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장애인들의 낮은 소득 수준이 저조한 생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이라면 장애인의 인적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이나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현상이 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차별에 기인한 것이라면 지역노동시장 내 존재하는 잘못된 선입견을 줄이고 차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적 임금차별

장애인 임금차별과 관련한 중요한 논제는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임금차별을 겪는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Baldwin and Johnson(1995)의 연구는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 집단이 겪는 임금차별 현상의 원인이 여성으로서의 차별과 장애인으로서의 차별을 동시에 겪는 데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차별의 구조를 이중적 차별

(double discrimination)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적 임금차별과 관련한 논의는 다중적인 차별요인들이 서로 독립적이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별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뒷받침 될 수 있다(Andersen and Collins, 2010). 예컨대 남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속성, 또는 계층적 요인에 의해서는 차별을 받을 수 있으나 남성이라는 성별(sex) 속성으로 인해서는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확장하여 여성장애인의 임금차별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Jones et al.(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의 대부분은 인적자본이나 경력 등 생산성과 관련한 요소들로 대부분이 설명된 반면,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는 성차별적 영향으로 인한 부분이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임금차별 뿐만 아니라 성별에 따른 차별의 위협에 동시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중요성을 갖는다. 한편 Bowe(1978)는 노동시장에서 겪는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약자의 속성으로 여성, 흑인, 고령자, 장애인을 제시하면서 이들 요인이 연계되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진숙(2004)은 J. Rawls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임금근로자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계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 및 임금정책 대안이 수립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여성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의 속성 중 두 가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집단으로서, 임금소득의 측면에서 최하위 집단에 속하게 된다. 다만,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격차에 장애와 성별이라는 속성이 동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두 속성 중 어떠한 속성이 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상이한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는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여성장애인의 이중적 임금격차와 관련한 연구를 시도한 연구로는 유동철(2000)의 연구가 있다. 유동철(2000)은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이 이중적 차별을 받고 있으며, 여성으로 인한 차

별 보다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더 큰 영향을 갖는다고 주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를 분해하여 임금차이와 임금차별적 영향을 계량화하여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이 겪는 전체임금격차 중 여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17.9%이며,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82.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연구의 경우 분석 대상이 지체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어 모든 여성장애인의 특성을 대표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인 정한나(2010)의 연구 역시 여성장애인의 임금차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분해를 시도하였으나, 대상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이 받는 장애차별과 성차별을 엄밀히 분해하지는 못했다는 점에서 일부 한계를 가진다. 더욱이 종단자료인 PSED 자료를 연구 자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년도의 자료만을 부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구 자료의 활용성을 높이지 못하였다.

3. 분석모형 및 분석방법

1) 임금함수의 설정

임금격차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임금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ncer(1974)의 임금함수를 토대로 임금함수를 구축하였다. Mincer(1974)의 임금함수는 개인이 보유한 인적자본이 임금을 결정한다는 인적자본이론에 기초하여 교육년수, 경력, 경력제곱과 같은 개인 특성을 설명변수로 사용하고, 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경력제곱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한 이유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력에 따른 한계수익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임금함수의 이론적 모형은 다음의 식(1)과 같이 설정된다.

$$\ln W_i = f(\text{Edu}, \text{Exp}, \text{Exp}^2) \quad (1)$$

위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개별 근

〈표 1〉 선정 변수와 정의

구분	변수		정의	
종속변수	시간당 실질 임금		시간당 실질 임금의 자연로그 값	
독립변수	인구학적 요인	연령(Age)	임금근로자의 연령	
		배우자여부(Marr)	기혼유배우=1, 이외=0	
		가구주여부(H_hold)	가구주=1, 이외=0	
	인적자본 요인	교육년수(Edu)	교육을 받은 기간	
		경력년수(Exp)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년수	
		경력년수 제공(Exp_2)	현재 직장에서의 경력년수의 제공항	
		자격증보유여부(Certi)	보유=1, 미보유=0	
		직업훈련여부(Train)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	
	노동시장 요인	정규직여부(Regular)	정규직=1, 비정규직=0	
		사업체규모 (Firmsize)	소(Firm_S)	사업체 종업원 수 1명~49명=1, 이외=0
			중(Firm_M)	사업체 종업원 수 50명~299명=1, 이외=0
대(Firm_L)			사업체 종업원 수 300명~=1, 이외=0	
노조여부(Union)		가입=1, 미가입=0		

로자의 시간당 평균임금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노동시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측정된 임금을 사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노동시간이 비장애인에 짧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임금격차가 과대추정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임금격차 분석은 분석대상이 되는 두 집단 간의 임금분포구조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포함하지만 (Oaxaca, 1973), 실제 임금이 정규분포를 이루지 못하거나 분포가 선형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분석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로 포함된 시간당 평균임금에 자연대수를 취하여 분석대상 집단의 임금분포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도록 변환하였다.

또한 임금함수의 이론적 모형에 임금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모형에 포함된 변수는 임금의 결정요인 관련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우선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Age), 배우자여부(Marr), 가구주여부(H_hold)를 포함하였다. Mincer(1974) 임금함수의 주요 설명요인인 인적자본 요인으로는 교육수준(Edu), 경력년수(Exp), 자격증보유여부(Certi), 직업훈련여부(Train)를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요

인으로는 정규직여부(Regular), 소속 사업체의 규모(Firmsize), 노조여부(Union)를 포함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력년수의 경우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증가율은 체감한다는 가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공항(Exp_2)을 추가하였다. 실증분석모형에 포함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1〉과 같다.

2) 임금격차 분해모형

(1) 전통적 임금격차 분해모형:

Oaxaca-Blinder 모형

임금격차 분해를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분해모형은 Oaxaca(1973)와 Blinder(1973)의 논의를 통해 제시된 OB모형이다. 일반적으로 OB모형은 특정한 한 시점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두 집단의 평균적인 임금격차를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OB모형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임금격차를 생산성에 차이에 따른 임금격차와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로 분해하여 각각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OB모형을 사용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격차를 분해한다고 할 때, 전체 임금격차의 일정 부분은 장애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차이로 설명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로 해석될

것이다. 다음의 식(2)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임금 격차를 분해하기 위한 OB모형을 나타낸다.

$$D = \overline{\ln W^n} - \overline{\ln W^d} \\ = \hat{\beta}^n (\overline{X^n} - \overline{X^d}) + \overline{X^d} (\hat{\beta}^n - \hat{\beta}^d) \quad (2)$$

위 식에서 X 는 임금함수 설명변수를 나타내며 n 과 d 는 각각 비장애인(non-disabled)과 장애인(disabled)을 나타낸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2)는 두 집단 간의 평균 임금격차가 두 가지 요인을 통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우변의 첫 번째 항은 각 집단의 근로자들이 보유한 평균적인 생산성 관련 특성 자체가 상이하여 발생하는 임금격차를 나타낸다. 우변의 두 번째 항은 두 집단 간에 생산성 관련 특성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 받는 대가의 차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발생하는 임금차별을 나타낸다.

OB모형을 통한 임금격차 분석은 생산성 차이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해함으로써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의미를 갖지만 임금에 영향을 모든 요소를 설명변수에 포함시키지 못할 경우 한계를 가진다. 식(2)에서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우변의 두 번째 항은 차별적 요소와 기타 분석과정에서의 오차를 함께 포함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OB모형을 통해 임금격차를 분해할 경우, 모수 추정상의 편의(omitted variable bias)가 발생하여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에 따른 임금격차의 정도가 과대추정될 위험성이 있다(정하나, 2010). 하지만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OB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분해모형의 사용이 요구된다.

(2) 시간에 따른 임금격차 변화 분해모형: Juhn-Murphy-Pierce 모형

JMP모형은 OB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다. JMP모형은 OB모형과 유사하게 두 집단 간의 임금격차를 생산성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는 부분과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분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시점이나 국가 간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즉, 단일 시점에 대한 횡단면 분석만이 가능한 OB모형과는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임금결정요인의 차이를 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OB모형을 통해서는 오차항에 따른 임금격차의 영향을 구별해낼 수 없었던 반면, JMP모형을 사용할 경우 관측할 수 없는 생산성 관련 요소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해할 수 있어 임금 분포도가 집단 간 임금격차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집단 간 임금결정구조의 변화를 기준집단 임금의 오차항 분포변화를 이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갖는다(안효주, 2007).

JMP모형은 관측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된 잔차 부분이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두 시점 사이에 발생한 두 집단 간 임금격차 양상의 변화를 총 네 가지 요인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두 집단 중 하나의 기준집단에 대해서만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해당 계수의 추정치를 대입하여 상대집단의 잔차를 계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다음의 식(3)은 비장애인(n)을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기준시점(제0년도)과 상대시점(제1년도) 사이의 임금함수를 추정한 후, 해당 계수 추정치를 바탕으로 JMP모형을 표현한 식이다.

$$D_1 - D_0 = (\Delta \overline{X_1} - \Delta \overline{X_0}) \hat{\beta}_1^n + \Delta \overline{X_0} (\hat{\beta}_1^n - \hat{\beta}_0^n) \\ + (\Delta \theta_1 - \Delta \theta_0) \sigma_1^n + \Delta \theta_0 (\sigma_1^n - \sigma_0^n) \quad (3)$$

위 식에서 θ 는 표준화된 잔차, σ 는 잔차의 표준편차를 각각 나타낸다. 우변을 구성하는 4개의 항은 각각 임금격차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항은 관측요소효과(observed X's effect)로서 모형에 포함된 설명변수를 통해 관측된 요소의 변화에 따른 효과를 의미한다. 이는 두 집단이 가진 임금결정요소의 시점 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임금차이로 정의할 수 있다. 예컨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장애인 집단의 숙련수준 향상 정도가 비장애인

집단에 비해 크다면, 이와 같은 두 집단 간 상대적 변화가 반영되어 임금격차가 감소하고 첫 번째 항은 음의 값을 가질 것이다. 다음으로 우변의 두 번째 항은 관측가격효과(observed prices effect)를 나타낸다. 이는 설명변수로 관측된 요소가 시장에서 받는 보상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만약 비장애인의 숙련수준에 대한 노동시장에서의 임금보상이 증가한다면, 숙련수준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가 변하지 않더라도 두 집단 간의 임금격차는 감소할 것이다.

세 번째 항은 비관측요소효과(unobserved X's effect)를 나타내며, 격차효과(gap effect) 또는 순위효과(ranking effect)로 명명되기도 한다. 이는 장애인 집단이 비장애인 집단과 평균적으로 같은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비장애인 집단의 임금분포 내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상대적 위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측정하기 위한 항이다. 이를 측정하는 것은 장애인 집단과 비장애인 집단이 서로 다른 임금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설명변수 값이 서로 동일한 두 근로자 사이에서도 임금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3)의 $\Delta\bar{\theta}_1 - \Delta\bar{\theta}_0$ 값은 설명변수를 통해 통제되지 않은 임금결정요소가 임금차별의 변화에 미친 영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시점 사이의 $\Delta\bar{\theta}$ 에는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나 법규에 따른 효과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제도의 영향이 완화되면 세 번째 항이 음의 값을 갖게 될 것이다.

우변의 네 번째 항은 비관측가격효과(unobserved prices effect)로서 분포도효과(dispersion effect)로도 불린다. 이 항은 사회전반적인 임금 불평등 정도의 변화가 두 시점 사이의 임금격차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비관측 요소에 대한 보상 수준 차이의 변화가 임금격차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설명변수를 통해 관측된 특성을 통제한 후 비장애인의 분포 상에서 장애인의 평균 임금의 위치가 일정하다고 할 때, 임금 잔차항의 분산의 변화가 장애인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식(3)에서 우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설명변수를 통해 관측된 특징에 대한 효과로서 생

산성과 관련된 변수들로 구성된다. 반면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관측되지 않은 특징에 따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JMP모형을 통해서만 측정할 수 있다.

3) 연구의 범위 및 분석자료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를 분해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자료를 이용하였다. 특히 PSED와 KLIPS 자료는 조사항목이 대부분 일치하므로 두 자료를 결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활용성이 높고 일관된 분석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두 자료 모두 패널조사에 기반하고 있어 종단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본 연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PSED 자료는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특서오가 경제활동 유형, 고용 및 임금실태와 관련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PSED 자료의 조사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15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등록장애인 5,092명이다. 본 조사는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패널의 연령을 2008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75세 이하로 제한하며, 조사편의성을 고려하여 제주지역은 제외하였다. 한편 KLIPS 자료는 비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5,000가구 내 가구원을 대상으로 1년 1회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하여 추적조사하는 종단면 조사 자료이다. KLIPS의 조사대상은 우선 전국을 대상으로 1,000개의 조사구를 선정하고, 2단계집락계통추출법(two-stage cluster 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여 선정된 조사구에서 각 5개의 가구를 임의 추출하였다. KLIPS의 원자료는 조사대상가구에 속한 만 15세 이상의 모든 가구구성원을 포함하며, 제주도 내 거주자와 병역의무이행자, 시설거주가구원에 대한 정보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단일 지역노동시장으로 설정되었다.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은 우리나라 인구의 50% 이상이 거주하는 가장

큰 노동시장이며, 상당수의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2012년의 PSED 자료에 따르면,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 표본의 47.01%가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은 여성장애인의 임금차별 및 노동여건과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대표성을 가지는 지역이면서 동시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역정책적 노력이 가장 크게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은 서울시 25개 구를 비롯하여 경기 북부의 고양, 파주, 양주, 동두천, 포천, 의정부, 경기 동부의 남양주, 구리, 하남, 경기 남부의 과천, 수원, 화성, 광주, 경기 서부의 광명, 시흥, 안산을 포함한다. 이는 통근률, 자급률, 인구규모 등을 반영하여 지역노동시장권(LLMAs: Local Labor Market Areas)을 설정한 이상호(2008)의 연구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노동시장권의 개념을 반영함으로써 거주지와 근무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PSED 자료를 통해서서는 장애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KLIPS 자료

를 통해서서는 비장애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따라서 KLIPS 자료가 포함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두 자료의 응답대상자 중 임금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두 자료를 결합하여 종단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 시점을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PSED 자료의 경우 1차(2008년)와 5차(2012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KLIPS 자료는 11차(2008년)와 15차(2012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의 대상 연령은 18-64세의 인구로 한정하였다.

4. 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에 대한 임금격차 분해에 앞서 분석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을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시점에 따라 표본을 2008년과 2012년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여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장애인, 남성비장애인의 4개 집단으로 구분하여 기술통

〈표 2〉 2008년도 기술통계량

구분	여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장애인	남성비장애인
월평균임금(백만원)	84.03	135.40	137.55	233.50
월평균 근로시간(시간)	172.36	195.50	189.17	211.43
시간당 실질임금(원)	5,354.55	7,333.99	8,265.10	11,838.62
시간당 실질임금의 자연로그 값	8.33	8.77	8.76	9.21
연령(년)	48.16	38.50	46.24	39.94
배우자여부(기혼=1)	0.47	0.59	0.70	0.66
가구주여부(가구주=1)	0.47	0.20	0.83	0.73
교육년수(년)	8.66	12.62	10.41	13.64
경력년수(년)	4.15	3.44	6.11	5.15
자격증보유여부(보유=1)	0.18	0.02	0.29	0.01
직업훈련여부(훈련받음=1)	0.12	0.05	0.13	0.08
정규직여부(정규직=1)	0.26	0.68	0.43	0.82
사업체규모				
소(1명-49명)	0.81	0.62	0.76	0.48
중(50명-299명)	0.10	0.30	0.18	0.35
대(300명 이상)	0.09	0.11	0.12	0.22
노조여부(노조가입=1)	0.10	0.06	0.11	0.08

〈표 3〉 2012년도 기술통계량

구분	여성장애인	여성비장애인	남성장애인	남성비장애인
월평균임금(백만원)	91.55	156.59	139.62	264.29
월평균 근로시간(시간)	163.78	185.49	185.18	200.83
시간당 실질임금(원)	7,114.16	8,731.53	8,096.28	13,192.16
시간당 실질임금의 자연로그 값	8.53	8.97	8.84	9.39
연령(년)	49.75	40.62	48.48	40.86
배우자여부(기혼=1)	0.47	0.62	0.62	0.69
가구주여부(가구주=1)	0.46	0.27	0.81	0.76
교육년수(년)	9.60	12.85	10.42	13.78
경력년수(년)	4.34	3.99	6.71	5.56
자격증보유여부(보유=1)	0.25	0.02	0.28	0.01
직업훈련여부(훈련받음=1)	0.20	0.05	0.15	0.03
정규직여부(정규직=1)	0.25	0.57	0.39	0.75
사업체규모				
소(1명-49명)	0.75	0.59	0.70	0.43
중(50명-299명)	0.16	0.30	0.18	0.35
대(300명 이상)	0.09	0.11	0.12	0.22
노조여부(노조가입=1)	0.02	0.06	0.11	0.08

계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기술통계량은 다음 〈표 2〉 및 〈표 3〉과 같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의 시간당 실질임금은 남성비장애인의 약 50%에 불과하여 상당한 임금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밖에 여성비장애인이나 남성장애인 집단과 비교하여도 여성장애인 집단의 시간당 임금은 2008년 남성장애인의 64.78%, 여성비장애인의 73.00%, 2012년 남성장애인의 87.87%, 여성비장애인의 81.48%에 그쳐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인 남성장애인의 임금격차보다는 여성비장애인인 남성비장애인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임금격차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의 임금상승 수준이 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성장애인의 임금상승 정도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금의 이중차별효과 분해결과(OB 임금격차 분해)

본 절에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받고 있는 임금차별 중 장애로 인한 차별과 성별로 인한 차별이 각각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OB모형을 통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8년도와 2012년도 각각에 대한 여성장애인의 장애임금격차 및 성별임금격차 분해결과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 소속된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는 2008년과 2012년 모두 성별 및 장애로 인한 임금격차를 동시에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8년과 2012년 사이 장애임금격차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성별임금격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장애에 따른 임금격차 분해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여성장애인이 가진 생산성 관련 요소들이 총 임금격차의 55.5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격차의 나머지 부분인 44.50%는 생산성 관련 속성에 대한 차별적인 보상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표 4〉 여성장애인의 Oaxaca-Blinder 임금분해 결과

구분	장애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Coefficient	%	Coefficient	%
총 임금격차: 2008 (A+B)	0.439		0.433	0.162
특성에 기인한 임금차이 (A)	0.244	55.50	0.271	62.56
연령	0.040	16.23	0.018	6.62
배우자여부	0.008	3.45	0.070	25.91
가구주여부	-0.033	-13.55	0.066	24.49
교육년수	0.164	67.43	0.032	11.87
경력년수	-0.007	-2.84	0.051	18.76
경력년수 제곱	-0.010	-4.04	-0.018	-6.80
자격증보유여부	-0.030	-12.18	0.030	11.18
직업훈련여부	0.015	6.13	0.000	0.06
정규직여부	0.084	34.33	0.034	12.53
사업체규모				
중(50명-299명)	0.017	6.90	-0.012	-4.26
대(300명 이상)	0.015	6.09	-0.006	-2.17
노조여부	-0.019	-7.96	0.005	1.80
차별로 인한 임금차이 (B)	0.195	44.50	0.162	37.44
연령	-0.028	-14.43	-0.433	-267.13
배우자여부	-0.175	-89.61	-0.015	-9.35
가구주여부	-0.116	-59.47	-0.126	-77.52
교육년수	0.406	208.07	0.044	27.12
경력년수	0.146	74.75	0.205	126.33
경력년수 제곱	-0.040	-20.38	-0.086	-52.71
자격증보유여부	-0.053	-26.96	-0.042	-26.02
직업훈련여부	0.001	0.29	0.040	24.35
정규직여부	0.029	14.84	0.025	15.57
사업체규모				
중(50명-299명)	0.045	23.24	0.012	7.37
대(300명 이상)	-0.048	-24.53	-0.047	-28.96
노조여부	0.012	6.31	0.011	6.78
상수	0.015	7.87	0.575	354.18
총 임금격차: 2012 (A'+B')	0.422		0.311	
특성에 기인한 임금차이 (A')	0.237	53.75	0.148	47.70
차별로 인한 임금차이 (B')	0.204	46.25	0.162	52.30

〈표 5〉 여성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장애와 성의 이중차별 영향 비교

구분	2008		2012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성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크기	0.195	0.162	0.204	0.162
비율 (%)	54.63	45.37	55.63	44.37

의 장애임금격차는 2008년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차별적 보상으로 인한 임금격차가 46.25%로 나타나 2008년에 비해 1.75%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생산성 관련 변수들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과 정규직여부 변수가 장애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여성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수혜를 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규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임금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교육수준 변수가 보상 수준의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같은 분석결과는 여성장애인은 애초에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수준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지만, 높은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더라도 그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여성비장애인과 임금격차가 증대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분해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는 여성장애인이 가진 생산성 관련 속성에 대한 차별적 보상이 총 임금격차의 37.44%를 설명하였으나 2012년에는 52.3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이 겪는 성별에 따른 차별적 임금격차가 증대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간의 성별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는 생산성과 관련성이 높은 교육년수, 경력, 정규직여부 등의 변수들보다 배우자여부나 가구주여부 변수에 의해 더 많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여부는 성별임금격차의 25.91%를, 가구주여부는 24.49%를 각각 설명하여 가장 큰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과 경력, 교육년수, 직업훈련여부 등이 동일하다 할지라도 보상에 대한 차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연령이 낮을수록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이중차별적 영향은 <표 4>를 통해 제시한 임금격차 분해결과 중에서 차별로 인한 임금격차 부분만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은 2008년도와 2012년도 모두 장애와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로 인한 임금격차와 성별로 인한 임금격차의 설명력은 각각 약 55%와 45%로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시간의 변화에 따른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변화 분해결과(JMP 임금격차 분해)

앞서 OB모형을 통해 도출한 분석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여성장애인의 특성 및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JMP모형을 사용하여 여성장애인의 임금격차변화를 분해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표 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 여성장애인 집단이 겪는 장애임금격차는 다소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임금격차의 증대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인 보상효과(B)와 소득불평등 수준의 증가(D)를 통해 설명되었다. 이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 집단은 여성비장애인 집단과 비교하여 관측된 요소들에 대한 임금보상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에서의 전반적인 임금불평등 수준이 증가함으로써 두 집단 간의 임금격차가 증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이 겪는 장애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닌 특성에 대한 합당한 임금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과 함께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에 형성된 여성장애인의 임금에 대한 차별적 분위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장애임금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관측 요소들을 살펴보면, 2008년에서 2012년 사이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이 향상되고, 자격증을 보유하며,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대규모 사업체에 종사하게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날 경우 장애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수준에 대한 보상은 2008년에 비해 감소하여 임금격차를 증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표 6〉 여성장애인의 Juhn-Murphy-Pierce 임금분해 결과

구분	장애임금격차		성별임금격차	
	Coefficient	%	Coefficient	%
총 임금격차 변화 (A+B+C+D)	0.001		-0.123	
관측된 특성에서 기인한 임금격차 변화 (A+B)	0.006		-0.084	
관측 요소 효과 (A)				
연령	-0.007	-108.70	-0.034	41.03
배우자여부	-0.001	15.76	-0.007	20.65
배우자여부	0.000	-0.18	-0.024	70.40
가구주여부	0.004	-65.59	0.000	1.31
교육년수	-0.040	594.74	-0.020	56.94
경력년수	0.008	-113.21	0.013	-36.28
경력년수제곱	0.002	-36.02	-0.004	11.46
자격증보유여부	-0.010	146.06	-0.020	59.08
직업훈련여부	0.017	-255.33	-0.005	13.94
정규직여부	-0.023	334.27	-0.006	17.23
사업체규모				
중(50명-299명)	0.001	-19.54	0.008	-22.09
대(300명이상)	-0.008	114.84	0.010	-27.60
노조여부	0.042	-615.81	0.022	-65.05
관측 요소 효과 (B)	0.013	208.70	-0.050	58.97
연령	0.010	76.39	-0.008	15.22
배우자여부	0.019	143.23	-0.036	72.26
가구주여부	-0.015	-114.54	0.045	-90.77
교육년수	0.025	192.61	-0.002	3.74
경력년수	0.003	19.35	-0.055	111.33
경력년수제곱	-0.002	-13.09	0.035	-70.07
자격증보유여부	0.047	361.79	-0.007	13.34
직업훈련여부	-0.052	-400.42	-0.009	19.12
정규직여부	-0.001	-10.90	0.003	-5.59
사업체규모				
중(50명-299명)	-0.005	-42.19	0.002	-3.85
대(300명이상)	-0.003	-20.60	-0.005	10.43
노조여부	-0.012	-91.63	-0.012	24.84
관측되지 않은 특성으로 인한 임금격차변화 (C+D)	-0.005		-0.039	
비관측요소효과 (C)	-0.059	1179.29	-0.025	63.58
비관측가격효과 (D)	0.054	-1079.29	-0.014	36.42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반대로 직업훈련에 대한 임금보상은 증가하여 임금격차를 감소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별임금격차변화에 대한 분해결과를 살펴보면 2012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

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성별임금격차는 2008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관측된 특성으로부터 기인한 임금격차의 변화 (A+B)와 관측되지 않은 특성에 따른 임금격차의 변화(C+D)가 모두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여성장애인이 겪는 성별임금격차를 보다 더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여성장애인의 어떠한 특성변화 및 보상수준변화가 성별임금격차의 완화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가 가진 각 특성별 변화에 따른 효과가 갖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장애인 집단이 혼인하였거나, 교육수준이 향상되었거나, 자격증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남성장애인 집단과의 임금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 지역 노동시장에서 여성장애인 집단의 경력이나 배우자여부에 대한 임금보상 여건이 개선되면서 임금격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여성장애인이 거주인 경우 보상수준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논의

본 연구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의 여성장애인 임금근로자 집단이 성별과 장애에 따른 임금차별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도가 어떠한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또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변화한 여성장애인의 특성과 노동시장의 보상 구조를 반영하여 임금격차변화를 분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여성장애인이 겪는 이중차별적 임금격차의 메커니즘을 파악하였으며, OB모형을 사용하여 이중적 차별의 구조를 확인한 후 JMP모형을 통해 임금격차 변화의 양상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은 2008년과 2012년 모두 장애와 성별에 따른 이중적 임금차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겪는 장애임금격차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적 보상과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임금격차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으나, 이는 여성장애인이 보유한 생산성 관련 특성이 향상됨에 따라 감소하는 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취약집단으로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차별의 이중차별적 구조를 확인하고 이러한 임금차별의 변화 양상을 종단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직면하는 차별적 결과는 단일한 하나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 임금차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장애에 따른 임금격차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분리하여 분석함으로써 이 같은 이론적 논의를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녔다. 본 연구는 다중적으로 작용하는 임금차별의 요인들을 동시에 반영하여 분석함으로써 취약집단에 대한 차별 관련 이론적 논의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둘째, 본 연구는 전통적인 OB모형뿐만 아니라 이 모형의 한계를 보완한 JMP모형을 사용하여 임금분해를 수행하였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JMP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집단 간 임금결정요인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횡단적 분석을 수행한 기존 연구들의 분해방법이 가졌던 한계를 보완한다는 이점을 갖는다.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JMP모형을 사용하지 못한 것이 여성장애인에 대한 시계열적인 자료구득의 어려움에 기인하였던 반면, 본 연구는 패널조사에 기반한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분석자료 활용의 폭을 넓히는 고유성을 가진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는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의 여성장애인이 겪는 임금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중요한 지역정책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설정한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노동시장의 여건에 따라 상이한 임금격차의 양상은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각 지역노동시장별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장애인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사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지역노동시장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는 임금격차에 대한 완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노동시장권 내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성별로 인한 임금차별을 모두 겪고 있었으며, 특히 장애차별로 인한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추이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 지역노동시장권에서는 여성장애인이 장애라는 속성으로 인해 받는 임금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임금정책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이 가진 특성 중 교육수준은 장애임금격차와 성별임금격차 모두를 완화시키고 있으므로, 여성장애인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욱, 2002. “노동시장의 여성장애인 이중차별구조”, 『사회복지정책』 15: 7-32.
 강동욱, 2004. “장애인 취업·임금차별에 관한 계량적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56(2): 121-144.
 김성희·정병오, 2011. “장애인의 임금결정에 관한 실증연구”, 『장애와 고용』 21(3): 185-208.
 김주영, 2009. 『한국의 임금격차』, 141-170, 한국노동연구원.
 안효주, 2007. “성별임금격차 구조분석: Oaxaca Decomposition과 Juhn-Murphy-Pierce Decomposition을 이용한 임금분해”,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오욱찬, 2011. “장애인-비장애인의 취업확률 및 임금격차 분석”, 『사회보장연구』 27(1): 1-25.
 유경준·황수경, 2005.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과 차이』, 한국개발연구원.
 유동철, 2000. “노동시장의 장애인 차별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서울.
 유완식·임수정, 2011.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재활복지』 17(1): 77-105.
 이상호, 2008. “지역노동시장권(LLMAs)의 측정과 적용 가능성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8(4): 147-182.
 이성규, 2000.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여성장애인 고용정책 방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진숙, 2004. “사회구조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대한 연구”, 『사회복지』 27: 163-186.
 이현영, 2014. “수도권 임금 근로자의 성별 임금격차: 직종 숙련특성에 따른 직종 간 임금격차와 직종 내 성별 임금격차”, 『지역연구』 20(4): 3-20.
 정한나, 2010. “장애인 성별임금 격차에 관한 실증분석”, 『장애와 고용』 20(1): 229-250.
 Arrow, K., 1971. 『The theory of discrimination』, Department of Economics.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dersen, M. L. and Collins, P. H. 2010. 『Race, Class, and Gender: An Anthology 7 edition』 Wadworth Inc.
 Becker, G. S. 1971.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the seconde edi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Baldwin, M. L. and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Men with Disabilities,”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 29(1): 1-9.
 Baldwin, M. L. and Johnson, W. G. 1994. “Labor market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 Journal of Economy and Society』, 34(4): 555-577.
 Bowe, F. 1978. “Handicapping America: Barriers to disabled people,” 『Psychology in the Schools』, 17(2): 286-287.
 Cotter, D. A., Hermsen, J. M. and Vanneman, R. 1999, Systems of gender, race, and class inequality: multilevel analysis, 『Social Forces』, 78(2): 433-460.
 Goodman, J. F. B. 1970. The definition and analysis of local labour markets: some empiric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Industrial Relations』, 8(2): 179-196.
 Jones, M. K., Paul L. L. and Peter, J. S. 2004. “Disability, gender, and the British labour market,” 『Oxford Economic Papers』, 58: 407-449.
 Kim, K, S., Min, I. S. and Choi, Y. S. 2013. “Dynamic decomposition of regional wage differentials in Korea,” 『The Social Science Journal』, 52(3): 311-321.

게재신청 2016.05.09
 심사일자 2016.06.08
 게재확정 2016.06.08
 주저자: 이영경, 교신저자: 임업